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13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민형배 · 조계원 · 최혁진
박지원 · 김우영 · 이성운
양부남 · 안도걸 · 소병훈
정준호 · 박민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입학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를 “학교의”로,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학교</u>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u>제외한다</u>)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는 <u>사람</u> (제29조에 따라 대학 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는 <u>사람은 제외한다</u>)으로부 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③ ~ ⑫ (생 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학</u> <u>교의</u> ----- ----- ----- <u>사람으로부터</u> ----- -----. ③ ~ ⑫ (현행과 같음)